



: 2020-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02421 위약금 등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찬, 김효경
피 고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세환, 김세화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90,000원 및 그 중 15,455,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15,455,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47,2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6.부터 각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190,000원 및 그 중 30,9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5.부터, 247,28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계약서	
계약명	D1)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서비스명 및 내용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24×365) - 장비 운영 대행 - 24시간 모니터링(Alive Check, 이상트래픽 모니터링) - 운영(툴셋 튜닝/업데이트, 환경설정 백업/복원) - 대응(실시간 공격 분석, 장애 대응) - 메일링 서비스(취약성 권고 메일링 서비스) - 24시간 Call Center 응대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탐지 URL 대상장비 - 대상장비: FG-100E * 1ea, FG-500E * 2ea, TP2200T * 2ea, WAPPLE5200 * 1ea
계약기간	2018. 4. 1. ~ 2020. 3. 31. (24개월)
계약금액	월간 보안관제 서비스 청구 금액 : 14,050,000원(부가세 별도)



	- 청구일정 : 매월 25일 - 지급조건 : 청구일 기준 익월 말 내 현금 지급
첨부서류	1.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계약 조건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계약자 피고(이하 '갑')와 서비스 제공자 원고(이하 '을')는 위의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계약 조건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보안 장비 임대 및 관제 서비스 계약서 (이하 '본 계약')의 각 조항의 내용과 권리 의무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제 서비스(이하 '보안관제'): 고객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하여 즉시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자료: 보안관제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서 등 문서 및 문서 외 형태의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3. 관제대상 시스템: 보안관제의 운영 대상 보안시스템으로 본 계약서에 관제대상 시스템 대상을 명시한다.

제3조(보안관제 제공의 범위 등)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보안관제의 범위 및 상세 내역은 본 계약서에 부속된 별첨 [관제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내역] 기타 문서 기재에 따른다.

제7조(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시정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그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 (3)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 상대방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모든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하며, 해제·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잔여 금액의 7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제10조(보안 사고의 입증책임 및 면책)

제11조(보안 사고 관련 손해배상의 특약)

제12조(손해배상청구)

- (1) 제10조에서 규정한 보안 사고 외의 계약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 (3) 본 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별첨. 관제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내역

1. 관제대상 시스템: 포티넷 방화벽 500E 2식, 100E 1식, 티핑IPS 2200T 2식, 펜타 WAPPLE-5200 1식
2. 관제 대상시스템 위치: 피고가 지정한 IDC센터 내의 랙



3. 보안 관제서비스 세부내역

- 관제시간: 24시간
- 매월 정기 보고서

구분	서비스 내용	Lite
모니터링	대상시스템 Alive Check	○
	이상 트래픽 모니터링	○
	해킹/영/바이러스 모니터링	○
	취약성 권고 메일링 서비스	○
운영	대상시스템 통상 운영/업데이트	○
	Anomaly, DDoS 정책설정	○
	대상 시스템 환경설정 백업/복원	○
대응	실시간 공격 분석	○
	공격 발생시 SLA에 의거한 조치	○
보고서	관제작업내역	○
	정기 보고서(월)	○
	글로벌/로컬 취약성 트렌드	○
헬프데스크	24시간 콜 센터 운영(Hot Line)	○
로그관리	보안시스템 설정값 백업	○
	로그서지 (영차백, 월일화백 로그 백업 제외)	30일
	로그검색	○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8년 4월 분 ~ 9월분 각 계약금액 15,455,000원(= 월 14,050,000원 + 부가가치세 1,405,000원)을 해당 월의 익월 말일경에 각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11. 27.경 원고에게 보안관제 방식을 기존의 물리적 장비(이 사건 계약 상 대상장비)에 기반한 IDC센터(Internet Data Center) 방식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AWS(Amazon Web Services)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8년 10월분, 11월분 각 계약금액을 미지급하였고, 2018.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 2019. 1. 15. 이 사건 해지 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증명

1)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이다.



을 재차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피고는 보안관제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더니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8년 10월분, 11월분 계약금액을 미지급한채 2018. 12. 12.경 이 사건 계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액 30,910,000원(= 월 계약금액 15,455,000원 × 2개월)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제9조 제(4)항의 위약금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약벌로서 잔여 계약기간인 16개월(2018년 12월 ~ 2020년 3월)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47,280,000원(= 월 계약금액 15,455,000원 × 1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 상 원고의 보안관제 서비스 이행의무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여 이 사건 계약 제7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 장비의 사용수익 권한을 포기하고 보안관제 방식을 AWS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보안



: 2020-10-30

관제 방식의 변경은 별다른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AWS 방식으로 보안관제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E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적절한 사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3) 설령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다수 당사자와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여둔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 조항은 그 반대해석 상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피고가 위약금 지급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해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과 동시에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인바, 이는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 법리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호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보안 업무의 비전문가인 피고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내용의 위 조항을 이 사건 계약에 포함시켰으므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되어 무효이다.

4) 설령 위 제9조 제(4)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통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 위 조항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에 준하는 반사회성,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는 전체 계약기간의 절반도 채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점,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계약 상 보안관제 서비스를 목적으로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7조 위반 여부

갑 제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경 피고 측의 의뢰로 피고에 대한 보안관제 서비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G'라는 보안관제업체를 통한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을 협의하였으나, G의 거부로 계약이 불발되어 협의를 중단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최초 견적 금액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3. 7. 새로운 보안관제업체를 물색하여 E로부터 계약서 샘플을 수령하는 등 협의를 거치고 2018. 3. 8.경 피고에게 이메일로 E에 관한 기재와 함께 견적서를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 피고의 담당직원 H는 보안관제업체가 E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피고는 E로부터 이메일로 매월 보안관제 리포트를 제출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E가 보안관제 업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E를 통해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양도, 이전, 위임, 기타 담보 목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거절 해당 여부

앞서 든 각 사실 및 그 인정근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보안관제 방식 변경 요청을



거절한 것이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살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및 목적은 '대상장비'인 FG-100E 1ea, FG-500E 2ea, TP2200T 2ea, WAPPLE5200 1ea를 원고가 임대하여 피고에게 설치하고, 위 대상장비를 통하여 '관제대상 시스템'인 피고의 포티넷 방화벽 500E 2식, 100E 1식, 티핑 IPS 2200T 2식, 펜타 WAPPLE-5200 1식에 대해 원고가 E를 통해 이 사건 계약서 별첨 표 기재와 같은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AWS 방식은 대상장비 없이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안관제 방식이 상이한바, 이 사건 계약이 AWS 방식에 따른 보안관제 서비스의 제공까지 포괄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의 대상장비를 통한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방식과 AWS 방식이 아무런 노력과 비용의 투입 없이 변경되어 제공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AWS 방식으로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3)항은 '이 사건 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서면에 의한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가 AWS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른 법률관계



1)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의 적용

결국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에 해당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해지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해지 통보 전 이미 발생한 계약금액 중 미지급한 2018년 10월분, 11월분 계약금액 합계 30,910,000원(= 월 계약금액 15,455,000원 × 2개월), ②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인 16개월(2018년 12월 ~ 2020년 3월)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47,280,000원(= 월 계약금액 15,455,000원 × 16개월)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가 대량 거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목적, 체결 과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적 교섭을 통해 그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실효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

갑 제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가 이 사



건 계약 상의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E는 계약금액 등 내용을 협의하고 2018. 3. 말경 보안관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E의 요청으로 F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별개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서비스명 및 내용, 계약기간은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하고, 다만 계약금액은 월 8,8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였으며, 제9조 제(3)항에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과 동일한 취지의 '보안관제 업무 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F, F과 E가 순차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사실 및 그 인정근거들에다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순차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F은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별개계약의 형식적인 계약당사자가 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협의는 원고와 E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주장대로 여러 단계의 중첩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보안관제 업무가 E에 의하여 이행된다는 점을 알고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별개계약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계약금액을 책정한 것이 반사회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내부 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고 이 사건 계약 상의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의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약금 약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9조 제(4)항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E는 이 사건 계약 상 피고에게 임대할 대상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 상의 대상장비를 신규로 구매하는 등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도 고려하여 이 사건 별개계약에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역시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은 그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별개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에 훨씬 못 미친다거나 이 사건 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 법리 위반 여부

이 사건 계약은 대상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대상장비를 통한 보안관제 업무 수행이라는 위임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위 임대차계약은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계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위임 업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는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1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 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0조 및 제11조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보안사고 외의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및 최고 절차 등을 규정하여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해두는 한편, 제(4)항에서 원고 귀책사유 없이 피고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일방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앞서 본 사유 내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은 위



임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민법 제689조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고,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약금 감액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별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참조).

위약금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



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그 인정근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넘어서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약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및 최고 절차 등을 규정하여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해두는 한편, 제(4)항에서 귀책사유 없이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일방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규정된 사유 내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제9조 제(4)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위약금의 몰취로 해결하고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제1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금에다 이 사건 위약금까지 더하여 이중의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위약금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경우에 손해배상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한 경우 원고가 제재적 성격을 지닌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 내부 사정의 변화 등 피고 사정에 의한 일방적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상의 대상장비 임대 의무 이행을 위해 E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의 대상장비를 새로 구매하게 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렀고, 이 사건 별개계약에서도 위 제9조 제(4)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바(다만 위약금은 계약금액에 연동되는바 계약금액을 달리 정하여 위약금 금액은 상이하다), 피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별개계약 상의 위약금을 지출하여야 할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⑤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두게 된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액과 위약금을 합한 278,190,000원(= 미지급 계약금액 30,910,000원 + 위약금 247,280,000원) 및 그 중 10월분 계약금액 15,455,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²⁾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11월분 계약금액 15,455,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위약금 247,28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날 이후로서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 16.부터³⁾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신동주

2)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의 이행기를 익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

3) 위약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를 최초로 수령한 날인 2018.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2018. 12. 27.자 내용증명(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위약금에 대해 2019. 1. 15.까지 지급기한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다음날인 2019. 1. 16.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
: 2020-10-30

판사 이효은